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국 어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최휘영<br>(문화체육관광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 . .  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어기본법」(법률 제21586호, 2026. 4. 28. 공포, 2026. 10. 2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(안 제19조의2 신설)

- 1)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, 국어문화원 상호 간 균형발전과 협력 증진 지원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.
- 2) 국어문화 진흥 및 국어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함.

나. 기존 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경과조치(부칙 규정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: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: 협의 예정

##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) ① 국어문화원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연합회는 법 제24조제2항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국어문화원 상호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 지원
2. 국어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
3.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
4. 국어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
5. 국어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
6. 국어문화원 관련 국내외 교류
7. 국어 진흥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
8.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다만, 그 수익은 제2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어문화원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「민법」

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영에 따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영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④ 이 영에 따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.

⑤ 이 영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영에 따른 국어문화원연합회 임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| 행 | 개                       | 정                  | 안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  | 제19조의2(국어문화원연합회의        | 설립 및 운영 등) ① 국어문화원 |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는 |
|       |   |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     | 필요한 직원을 둔다.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|   | ② 연합회는 법 제24조제2항의       | 설립목적               |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     |
|       |   |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| 1. 국어문화원 상호간의 균형발전과     | 협력증진 지원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| 2. 국어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| 3.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| 4. 국어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    | 위한 연수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| 5. 국어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    | 자문 및 지원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| 6. 국어문화원 관련 국내외 교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| 7. 국어 진흥을 위하여 국가, 지방    |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위탁  | 하는 사업              |
|       |   | 8.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  |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|   | ③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       |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 |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<p><u>있다. 다만, 그 수익은 제2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<u>제2조(국어문화원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영에 따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영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④ 이 영에 따른 국어문화원연합회는</u></p> |

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 
연합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 
재산을 승계한다.

⑤ 이 영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어  
문화원연합회의 회장을 포함한  
임직원은 이 영에 따른 국어문화원  
연합회 임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 
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      | (044) 203 - 2534 |